



여성가족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단체 아동·장애인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실시 요청

1. 관련

- 가.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-3046('21.4.19)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
- 나.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-3721('21.7.5.)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
- 다.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-2650호('21.6.1)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

2.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,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,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및 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*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각각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.

* 21년부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추가

3. 이에,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단체 (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, 한국유스호스텔연맹,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)에서는 붙임1~3을 참고하여, 장 및 종사자에 대한 2021년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내에 이수하여 주시고, 그 결과를 붙임4양식으로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자료
2.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자료
3.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자료
4. 결과보고서 양식 모음. 끝.

여성가족부장관

수신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,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총재,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장

주무관 **조준홍** 청소년활동안전과 전과장 2021. 7. 30.
양종윤

협조자

시행 청소년활동안전과-2810 접수

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(여성가족부) / <http://www.mogef.go.kr>

전화번호 0221006266 팩스번호 0221006459 / junhongcho@korea.kr / 부분공개(5,7)